

[양형위원회 제134차 회의 경과 및 결과의 요지]

1. 양형위원회 제134차 회의 내역

- 일시: 2024. 9. 30. 16:00
- 장소: 대법원 1601호 중회의실
- 주요 안건:
 - ①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(권고 형량범위, 양형인자, 집행유예 기준) 심의 및 수정안 확정
 - ② ‘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’ 가중인자 관련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추가 심의

2. 운영지원단 업무보고

- 전문위원 회의 업무지원
- 양형위원 개임, 위촉장 수여식 개최
-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

3. 전문위원 업무보고

- 전문위원 제164차 전체회의 내역 보고

4.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(권고 형량범위, 양형인자, 집행유예 기준) 심의 및 수정안 확정

가. 권고 형량범위

1) 전문위원단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쟁점

가) 권고 형량범위 안

- (1) 소유형 분류가 유사하고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를 참조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하는 안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일반적 범행	6월 - 8월	4월 - 10월 1년	6월 - 1년2월 8월 - 2년
2	영업적·조직적·범죄이용목적 범행	8월 - 10월	6월 - 1년6월	10월 - 2년6월 1년 - 4년

(2) 법정형 상향, 엄정한 처벌 요구 등을 고려하여 유사수신행위범위
반범죄보다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하는 안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일반적 범행	6월 - 8월	4월 - 10월 6월 - 1년	6월 - 1년2월 10월 - 2년6월
2	영업적·조직적·범죄이용목적 범행	8월 - 1년	6월 - 1년6월 10월 - 2년6월	10월 - 2년6월 2년 - 4년

나) 심의 결과

- 소유형 분류가 유사하고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수신행위범위반범죄를 참조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하는 (1)안을 채택함
- (2)안으로 하자는 소수의견 있었음

나. 양형인자

1) 전문위원단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쟁점

- 가) 특별양형인자인 ‘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(2유형 중 조직적 범행)’의 괄호 부분을 그대로 두고, ‘단순 가담’의 범위를 그에 상응하여 축소할지 여부(적극)
- 견해 일치로 특별양형인자인 ‘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(2유형 중 조직적 범행)’의 괄호 부분을 그대로 두고, ‘단순 가담(2유형 중 조직적 범행)’으로 하기로 함

나) 일반양형인자인 ‘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’를 특별양형인자로 변경할지 여부(소극)

- 현행을 유지하기로 함
- 추가하자는 소수의견 있었음

다) ‘후속범죄에 대한 피해 회복 또는 그 피해자의 처벌불원’을 일반양형인자로 추가할지 여부(적극)

- 견해 일치로 추가하기로 함

다. 집행유예 기준

1) 전문위원단에서 의견이 일치한 쟁점

가) 내용은 아래와 같음

구분	부정적	긍정적
주요 참작 사유	●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(2유형 중 조직적 범행) ●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● 동종 전과[5년 이내의,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(집행유예 포함)]	●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● 단순 가담(2유형 중 조직적 범행) ● 자수, 내부고발 또는 범행(2유형 중 조직적 범행)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● 자발적 거래정지·분실신고 등으로 후속범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● 형사처벌 전력 없음
일반 참작 사유	●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●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●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●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● 진지한 반성 없음 ●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	●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● 생계형 범죄 ●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● 일반적 수사협조 ●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●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● 진지한 반성 ●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●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● 후속범죄에 대한 피해 회복 또는 그 피해자의 처벌불원

나) 심의 결과

- 견해일치로 전문위원단 의견과 동일하게 결정함

5. ‘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’ 가중인자 관련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

추가 심의

1) 전문위원단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쟁점

가) 가중처벌의 대상 범위에 ‘자동차정비업자’를 포함할지 여부(소극)

-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음(견해 일치)

나) 가중처벌의 대상을 ‘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’로 한정할지 여부

- 한정하지 않기로 함
- 한정하자는 소수의견 있었음

다) 추가 심의 예정

양형인자의 적용범위 및 구체적인 방식 등에 관하여 전문위원단의 추가 연구를 거쳐 차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속행하기로 함

6. 향후 일정

가. 제135차 양형위원 전체회의

■ 일시 : 2024. 11. 1.(금) 오후

- 안건 : ①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안(권고 형량범위, 형종 선택의 기준, 양형인자, 집행유예 기준) 심의 및 설정안 확정
- ② ‘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’ 가중인자 관련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추가 심의